

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- 존경하는 김영옥 위원장님,
그리고 선배 · 동료 위원 여러분!
안녕하십니까?
더불어민주당 은평 제2선거구 출신 이병도 의원입니다.
- 「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
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
- 지금부터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2418호
「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.
- 사회복지사 등은 복지수요 증가로 인한 업무과다와 현장에서
겪는 언어 · 물리적 폭력, 인권침해 등에 의해 심각한 소진 상태에
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.

- 이에, '사회복지사 등의 신체적·정신적 건강보호 사업' 근거를 마련하여 건강 유지와 회복을 지원하고, 지속가능한 근무환경 조성과 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.
- 또한, 사회복지사 등 처우 개선의 구체적 범위를 제한적으로 명시한 기존 목적 규정을 종합적이고 포괄적으로 개정하여,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한 보다 다양한 정책적 접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.
-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
-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,
아무쪼록, 이 개정안의 입법취지를 살피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
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